KB개인상해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 1) 피보험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 위험직종 근무자, 위험운동 참가자, 연령 등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만 15세미만자에 대한 사망위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 1)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적용됩니다.
- 2)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소멸성 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가.보험금 지급사유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기본 계약	24시간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사망보험금, 또는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선택 계약	휴일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사망보험금, 또는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골절수술 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아래의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수익자에게 골절수술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봅니다.	

위 주요보장 이외에도 주말교통상해시의 사망 후유장해 등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다.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
- 배상책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동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3. 보험료 산출 예시

산출기준: 보험기간 1년, 직업급수 1급(사무직), 연령 35세(남)

보장구성	보장금액	보험료
24시간상해 사망 후유장해	-유장해 1억원	
휴일상해 사망 후유장해	1억원	49,220원 -
골절수술 위로금	50만원	

4. 보험료 산출기초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5.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7. 기타 알아두실 사항

- Q) 사망시 보험금 수령권자는?
- A)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이며, 보험수익자를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 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8. 자주 발생하는 민원(예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변경

- 민원: 홍길동 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직업을 변경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은 것에 대해 불만 제기
- 해설: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되는 경우에 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